1. 개정(제정)이유

선거우편물 특수취급 역무에 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선거우편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송달을 통해 선거의 신뢰성 강화 및 공정한 선거관리에 기여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선거우편 제도 신설(안 제25조제1항제22호)

기본적 우편서비스인 보편적서비스의 특수취급 종류에 '선거우편물 특수취급제도'를 추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　　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미래창조과학부령 제 호

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제12조의2제1항 중 “제70조의10 부터 제70조의15까지”를 “제70조의11부터 제70조의15까지, 제106조”로 한다.

제25조제1항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2. 선거우편 : 「국민투표법」,「공직선거법」,기타 선거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선거우편물(이하 "국민투표 등의 우편물"이라 한다)로서 우편 송달방법 및 취급절차 등을 특수취급하는 제도

제1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국민투표 등의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·고시하는 우체국에서 접수한다.

별표 1과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종류(제12조의2제2항 관련)

보편적 역무 / 특수취급	통상우편물	소포우편물
등기취급	○	○
통화등기	○	
물품등기	○	○
유가증권등기	○	
대금교환		○
내용증명	○	
배달증명	○	○
국내특급우편	○	○
특별송달	○	
민원우편	○	
우편물방문접수	○	○
착불배달	○	○
계약등기	○	
회신우편	○	
본인지정우편	○	
우편주소정보제공	○	
환부정보제공	○	
선거우편	○	

[별표 2]

보편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(제12조의2제3항 관련)

구 분	등기	배달증명	국내특급우편	착불배달	회신우편	본인지정배달	우편주소정보제공	선거우편
등기취급		○	○				○	○
통화등기	○	○	○					
물품등기	○	○	○					
유가증권등기	○	○	○					
대금교환	○	○	○					
내용증명	○	○	○					
배달증명	○		○					
국내특급우편	○	○						
특별송달	○		○					
민원우편	○		○					
우편물방문접수	○	○	○					
착불배달	○							
계약등기	○	○	○	○	○	○	○	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의2(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) ①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은 제25조제1항, 제26조부터 제66조까지, 제70조의10 부터 제70조의15까지를 준용한다.	제12조의2(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) ① ----------제70조의11부터 제70조의15까지, 제106조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25조(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)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	제25조(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 및 이용조건 등) ①----------.
1. ~ 21. (생 략)	1. ~ 21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22. 선거우편 : 「국민투표법」, 「공직선거법」,기타 선거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선거우편물(이하 "국민투표 등의 우편물"이라 한다)로서 우편 송달방법 및 취급절차 등을 특수취급하는 제도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106조(국민투표등의 우편물) ① 「국민투표법」·「공직선거법」 기타 선거관계 법률에서	제106조(국민투표등의 우편물) ① 국민투표 등의 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·고시하는 우

정하는 선거우편물(이하 "국민투표등의 우편물"이라 한다)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·고시하는 우체국에서 접수한다.	체국에서 접수한다.